

정책보고서 2007-7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연구

변용찬 강민희 이병화

이승기 조형석 장선아

보 건 복 지 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머 리 말

여러 연구에서 지적되어 왔듯이 장애인은 교육과 취업, 그리고 사회활동 등에서 비장애인들과 같은 질과 수준의 사회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장애인이라는 소수자 그룹으로 낮은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되고 기본적 권리와 참여의 기회가 많은 부분 제한되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들은 가장 가까운 가족 내에서의 차별 뿐 아니라 학교생활과 취업 시, 그리고 직장생활전반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한국사회 내에서는 지난 몇 십년간 다양한 사회운동이 전개되었고 그 성과의 하나로 차별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차별문제가 사회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특히 장애인차별에 대한 문제는 지금까지 그 문제의 심각성이 분명히 인식되지 못하였던 사회문제라는 점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하게 되었다. 장애인차별은 특정 영역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복합적인 형태로, 또한 전 생애를 통하여 연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필요성에 학계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장애인차별을, 여성차별 등과 같이, 법으로 규제하여 차별을 없앨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함을 주장하고 있으며 장애인 당사자들 역시 법적근거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이를 위해 매우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2007년 3월 국회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통과되었으며 이 법의 구체적인 하위법령 마련을 남겨두고 있다. 하위법령 역시 장차법이 제정될 때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취지에서 제정되어 실시되고 있는 여러 외국의 법들과 관련 국내법령의 상세한 검토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차별을 없앨 수 있는 보다 자세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관련법령의 검토 등

문헌연구와 장애차별의 실례를 각 차별의 영역별로 보다 상세히 분류 연구하는 등 사례조사를 함께 실시하고 여러 차례 전문가들과의 토론과 공청회를 거쳐 실제적인 하위법령의 초안을 마련하여 본 보고서를 완성하였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 연구가 장애인차별을 없앨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신장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변용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강민희 부연구위원, 이병화 연구원, 그리고 이승기 남서울대 교수,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사무관, 장선아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연구원의 공동연구로 이루어 졌음을 밝히며 이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다.

2007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김 용 문

목 차

요 약	9
제1장 서론	2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6
제3절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정	27
제2장 외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검토	31
제1절 미국	31
제2절 영국	38
제3절 호주	47
제4절 독일	55
제5절 홍콩	62
제6절 외국 관련법령의 시사점	67
제3장 차별영역 사례조사	78
제1절 고용	79
제2절 교육	83
제3절 재화와 용역	88
제4절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92
제5절 모·부성권, 성, 가족, 건강권, 장애여성 등	96

제6절 다양한 차별사례의 시사점	100
제4장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국내법령 및 정부 각 부처의 주요업무계획 검토	102
제1절 국내의 대표적인 차별금지법령	102
제2절 장차법과 충돌하는 법령	107
제3절 사회복지시설 관련법규와 장차법의 비교검토	110
제4절 정부 각 부처의 장애관련 주요업무계획과 장차법의 비교검토	112
제5장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안) 검토	123
제1절 장차법 및 위임된 시행령의 내용과 관계법령	123
제2절 시행령 제정과정과 주요 쟁점사항	141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82
참고문헌	186

표 목 차

〈표 2-6-1〉 한국의 시행령(안)과 관련 외국법조항	70
〈표 5-2-1〉 정부 시행령(안)과 장추련 시행령(안) 비교표	161

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장애인복지의 목적은 장애인복지과정을 통해서 장애인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달성하는 것으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지위상태에 있으며, 교육, 취업, 기타 사회활동 등의 생활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장애인은 동등한 위치에서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 권리와 참여의 기회가 많은 부분 제한되는 상태의 차별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음.
 - 2005년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장애인은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의 차별(6.0%)에서부터 초등학교 입학시(33.8%), 취업시(39.1%)등 생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간 다양한 사회운동의 성과로 인하여 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차별에 대한 문제는 사회의 주요 이슈가 됨.
 - 특히 장애인의 차별은 특정 사유나 영역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이 연속선상에 놓여있고 또한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차별시정 요구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현실임.
 - 장애계 역시 장애인차별금지법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요구와 움직임이 매우 활발히 진행됨.
-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맞추어 2007년 3월 국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이 통과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차별 영역에 대한 현실파악과 장차법 관련 외국법령의 검

토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인 하위법령을 마련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장애인의 기본권확보에 의한 사회통합으로 인권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함.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 국내 장차법 취지에 근거한 국내법령 검토
 - 복지부의 하위법령을 포함한 장차법 취지에 근거한 국내법령인 「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2007년 12월 일부개정) 등의 법령 검토를 통해 시사점 도출
- 장차법 관련 외국 동향분석
 - 우리나라 장차법 하위법령에 포함할 내용과 관련한 외국의 법률분석
 - 외국의 장차법 동향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장차법 하위법안 마련에 필요한 시사점 도출
- 국내 차별영역별 현황(여건) 조사
 - 장차법의 하위법령 위임사항에 대하여 국내 현실과 여건을 파악 분석함으로써 장차법의 단계적 실행 및 시행시기 등에 관한 하위법령 마련시 객관적인 근거 자료 확보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하위 법령에서 인권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설치 기준, 기타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 등을 검토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부합되는지 여부 등 검토
 - 개선안 마련시 이에 대한 장애계, 재계 등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법령안에 관한 관련단체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시함.
- 장차법의 구체적인 하위법령(초안)을 마련하여 제시함.
 - 장차법 시행령 제정과정에서의 정부안과 장애계안의 주요 쟁점사항 검토

- 시행령 초안 마련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 국내의 장차법에 관한 법률 취지에 근거한 국내법령 검토
- 주요 선진국의 장차법 및 하위법령의 내용과 준수규정에 관한 내용 검토

□ 사례조사

- 장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영역별(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성 등,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영역)장차법의 구체적인 하위법령 마련위한 사례 분석 실시

□ 전문가 간담회

- 장차법 하위법령 마련위한 학계, 장애계, 법조계, 관련 부처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전문가간담회는 차별영역의 각 주제별로 실시

□ 공청회 실시

- 장차법의 하위법령(안)에 대한 전문가, 장애인 및 일반시민 등 각계로부터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를 실시

제3절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과정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시작된 지 6년여 만인 2007년 4월 10일에 입법화 됨

- 첫 번째 단계는, 2001년 열린네트워크에서 시작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의 결성을 거쳐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시점까지인데 이 시기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도권에 실질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시기로 특징지을 수 있음
- 두 번째 단계는, 장추련의 장차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장애인차별금지법 민

관공동기획단이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 설치되기 전까지의 단계인데 이 시기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에 대해 정부 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낸 시기로 볼 수 있음

- 세 번째 단계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장애계와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해 나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민관공동기획단의 활동기에 해당함
- 네 번째 단계는, 민관공동기획단에서 마련한 정부와 장애계의 조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법안으로 만들어지는 시기라 할 수 있음

제2장 외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검토

제1절 미국

- 미국 장애인법(ADA: American with Disability Act)은 1990년 7월 26일 입법되었음.
 - ADA는 법의 목적을 4가지 차원에서 밝히고 있음. 첫째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 철폐를 위한 명백하고 포괄적인 국가적 의무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는 장애인 차별을 다루는 명백하고 강력하며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며, 셋째는, 이 법에 규정된 기준을 시행함에 있어서 연방 정부가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보장하는 것이고, 넷째는,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이 겪는 차별을 다루기 위해 의회의 권한을 발동하기 위한 것임.
- ADA는 장애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개인의 주요생활 활동의 하나 또는 그 이상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육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그러한 손상의 기록. 그러한 손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장애로 정의하고 있어서 장애의 개념을 폭넓게 인정함.
- ADA는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장은 제1장 고용(Title I : employment), 제2장 공공서비스(Title II : public services), 제3장 민간제공의 공공편의시설 및 서비스(Title III : Public accommodations and services operated by private entities),

제4장 전기통신(Title IV : telecommunications) 및 제5장 기타 조항(Title V : other miscellaneous provisions)으로 나뉘어 장애인 차별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제2절 영국

- 영국의 장애차별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행위를 해소하고, 고용, 교육, 교통, 그리고 재화나 서비스 제공 등의 분야에서 장애인들이 공평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 1995년 제정됨.
 - 제정 이후 이 법은 계속적으로 추가적 조항이 삽입되거나 개정됨.
 - 장애인의 권리, 사물이나 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권리인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물리적인 장벽의 제거, 의사전달, 통신의 장벽제거 등을 규정함.
 - 고용, 교육, 시설·서비스에 대한 접근권, 토지 혹은 재산의 소유 또는 대여에 관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함.
 - 현실에서 벌어지는 차별을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이동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중교통이용을 위한 정부의 의무로서 최소한의 규정을 세우도록 요구함.
- 장애차별의 개념을 네 가지 정도로 규정함.
 - 첫째,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동등한 참여기회를 박탈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행위.
 - 둘째는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존엄성을 해하거나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 셋째는 장애에 관련된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끼치는 행위.
 - 넷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적절한 조정의무(duty of reasonable adjustment)를 수행하지 않은 행위.
- 장애차별법은 모두 8개 부문으로 구성됨.
 - 첫 번째는 장애의 개념과 범위 등을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는 고용 부문에서

고용주와 조합단체 등에 의해 행해질 수 있는 장애차별 및 희롱에 대해 설명하고 또한 고용주와 조합단체가 이행해야 할 조정의무를 규정. 세 번째는 서비스 분야에서의 장애차별을, 네 번째는 교육부분에서의 차별을 다루고 있으며 다섯 번째는 대중교통이용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장애차별을 규정. 여섯 번째에서 여덟 번째까지는 장애차별 발생 시 구제를 위한 행정·사법 절차 등과 담당기관에 대해 설명함.

제3절 호주

- 호주의 장애차별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은 1992년에 제정됨.
 - 이 법은 장애를 근거로 한 장애인 차별을 막고, 다른 시민들과 동등한 권리를 장애인들이 법적으로 보장받게 하며 그 권리보장의 원칙을 수립하기 위해 만듦.
 - 목적은 가능한 한 장애를 근거로 하는 차별을 없애는 것, 장애를 가진 이들이 법 앞에서 평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장애인의 권리가 지역사회에 받아들여지게 하는 것임.
-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장애는 현재의 장애, 과거에 가졌던 장애, 미래에 존재할 수 있는 장애, 유전적 장애 등 광범위하며 이러한 장애의 구체적 범위는 신체적 손상뿐 아니라 질병 혹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기관을 가지는 것과 정신적, 인지적, 학습 장애까지 폭넓게 규정함.
- 법에서 규정하는 차별의 영역으로는, 고용과 계약상의 차별 등을 명시한 직장에서의 차별과, 교육과 부동산 접근권에서의 차별을 명시한 기타영역에서의 차별로 나눔.
- 법은 I.전문 II.장애차별의 금지 III.실행계획 IV. 인권및기회평등위원회의 기능 V. 기타위법행위 VI.장애차별금지위원회위원 VII. 기타사항 7개 분야로 구성됨.

제4절 독일

- 21C 장애인정책 패러다임이 변함에 따라 2001년을 기준으로 3가지 중요한 법률

이 개정 또는 제정되는 것으로 구체화됨.

- 첫째는 독일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재활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규정한 사회법전 제9권(Das Sozial Gesetzbuch IX -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 : SGB IX)이 개정됨.
 - 이 법은 장애인 스스로의 참여(Teilhabe)라는 개념을 사회복지에 추가한 것임. 여기에서 참여는 장애인들이 사회생활 특히 직업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사회보장급부를 통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 둘째는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평등법(Gesetz zur Gleichstellung behinderter Menschen : BGG)이 장애인의 차별을 제거하고 예방하며 장애인의 동등한 사회생활에 대한 평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목적성을 가지고 제정됨.
 - 장애인평등법은 총 4장 1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셋째는 2006년 8월 18일에 시행된 차별금지법(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 AGG)을 통하여 총체적인 차별에 대한 계획 수립.
 - 이 법은 2006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사회전반적인 차별에 대한 보호막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5절 홍콩

- 홍콩의 장애차별법(DDO: Disability Discrimination Ordinance)은 1996년에 제정되었으며 모든 장애영역을 총괄하고 있음.
- 장애차별법의 보호대상은 장애인을 비롯하여 배우자, 장애인과 같이 살고 있는 사람, 친척, 개호인, 동료까지 모두 포함됨.
- 장애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의 전체 또는 부분적인 손실, 신체 일부의 전체 또는 부분적인 손실, HIV와 같은 질병을 야기하는 기관의 존재, 신체 일부분이 완전히 기능하지 못하거나 형태가 잘못된 것. 사람의 현실 인지력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 또는 질병, 불안한 행동을 야기하는 감정이나 판단, 학습장애로 규정된다.
 - 과거, 현재, 미래의 장애를 모두 포함하고 있음.

- 차별금지영역은 고용, 교육, 토지의 매각 및 관리에 대한 접근권, 상품서비스시설의 제공, 법정변호사 개업, 클럽 및 스포츠 활동 등임.
- 차별시정기구로 기회평등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설립되어 있음.
 - 주요기능은 고소의 중재와 조정, 전략적인 소송, 공식적인 조사, 판례 발간, 연구와 교육 등임.

제6절 외국 관련법령의 시사점

-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하위법령 제정
 -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특징은 거의 모든 생활영역을 규율하고 있고, 장애인과 시설주, 사업자 등 한정된 주체와 관련되어 있어 적절한 균형모색이 필요함.
- 장애인차별 시정기구의 전문성 강화
 - 우리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차별을 전담하는 소위원회를 두어 모든 장애인차별 문제를 다루도록 있어, 차별시정기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향후 하위법령 및 국가인권위원회 규칙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점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함.
- 벌칙조항 적용의 현실성과 합리성 고려
 - 특별한 조항에 한정하여 처벌과 벌금을 구형하는 외국법의 경우와는 달리 한국의 장차법은 규정된 모든 편의제공 조항에 적용될 뿐 아니라 벌칙의 강도가 높아 이에 대한 부담감과 거부감을 동반할 수도 있음. 따라서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와 법준수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

제3장 차별영역 사례조사

- 고용의 경우, 공평한 입사기회와 경쟁과 승진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고용주가 이행해야 할 의무로서 규정되어져야할 것임.
- 교육의 경우, 입학과 편입과정에서 장애학생을 배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교

육과정에서 장애학생들이 소외를 경험하지 않고 비장애학생과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들이 규정되어야 함.

- 서비스 제공 분야의 경우 장애를 가진 이유로 서비스 이용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또한 정보나 건물 등에의 폭넓은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함.
- 사법·행정 절차의 경우, 특히 수사과정에서 장애인들의 의사소통지원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함.
- 장애여성이나 남성이 자신의 장애를 이유로 모성권과 부성권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그들 성에 대한 존엄성을 침해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들도 다른 비장애인들처럼 그들의 성(性)을 온전히 인정받고 그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함.
- 장차법에서 위임된 각 영역의 시행령들은 편의의 내용과 편의제공의 단계적 이행 등이 같은 사항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규정해야 할 조항들이므로 시행령제정의 의의가 매우 큼.

제4장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국내 관계법령 및 정부 각 부처의 주요업무계획 검토

제1절 국내의 대표적인 차별금지법령

- 국내법에 규정된 차별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4조의2는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고용정책기본법」 제19조 제1항은 ‘성별, 신앙,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을 「교육기본법」 제4조는 ‘성별, 종교, 신념,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3조 제3항은 ‘성별·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근로기준법」 제6조는 ‘남녀의 성,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1호는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

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을 이외에도 많은 국내법에서 차별사유를 규정함. 이러한 법률들은 차별시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률이라기보다는 각 법률마다 그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차별시정은 부가적인 기능임.

- 「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차법)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은 차별시정을 주로 하는 법률임.

제2절 장차법과 충돌하는 법령

-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우리 사회에서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나타남.
 - 고용, 교육, 공공시설의 이용, 이동 및 교통수단, 정보의 접근 및 커뮤니케이션, 각종 제한과 강제불입 등 중대한 인권침해로 까지 나타나고 있음
 - 장애인의 생명보험 계약금지, 정신장애인의 인공임신중절 허용, 정신장애인의 시설물 출입제한 등 기존 법령들 중에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충돌하는 법령들이 아직 존재하고 있음.

제3절 사회복지시설 관련법규와 장차법의 비교검토

-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장애인이 퇴소를 요구할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퇴소를 시켜야 하는데,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각종 서비스가 미비한 상태에서 지역사회 내에서의 생활이 가능할지 우려됨.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를 통하여 인권의 관점에서 시설의 입·퇴소 조향, 시설의 설치 기준 등에 대한 재검토, 지역사회 서비스와의 연계 강화 방안 등 시설의 운영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함.

제4절 정부 각 부처의 장애관련 주요업무계획과 장차법의 비교검토

- 교육인적자원부
 - 생애 전 단계를 통해 장애인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려는 것과 통합 혹은 특수교

육이 필요한 각각의 교육현장을 현실성 있게 지원하는 것은, 장차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한 정책이라 할 수 있음.

- 직업교육에의 지원은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여 노동권과 생존권을 확보하고 사회적 관계형성을 도모하게 하여 장애인의 주류사회통합에 큰 역할을 할 것임.

□ 노동부

- ‘고용장려금’등의 직접지원을 늘이고 관련법의 개정을 통한 세금면제와 ‘1사1자회사설립’과 같이 자기고용율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의 지원추진계획은 실제적인 고용률을 높이는 등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좋은 유도정책임.
- 편의시설과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정책은 고용부문에 있어 사업장 내 “시설과 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등과 같이 장애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장차법의 실행과 함께 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보건복지부

- 장애인의 직종개발과 취업확대는 노동부의 일자리 창출과 맥을 같이하여 그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임.
- 장애인보조기구의 관리체계를 세부적으로 재정비하는 작업과 활동서비스의 내실화는 장차법의 중추를 이루는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 즉 서비스 제공과 문화·예술의 참여와 향유, 그리고 사법·행정절차상의 권리확보 등과 관련한 편의시설 제공과 의사소통 원활화와도 일치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정보통신부

- 정보통신부문의 핵심사안인 웹접근성확보를 위한 홈페이지개선과 현실성 높은 콘텐츠 개발, 그리고 정보통신 보조기기의 보급과 확대는 시행령 위임사항의 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3차 5개년계획은 장차법 실행에 추동력을 더할 수 있는 정책이라 볼 수 있음.

□ 건설교통부

- 저상버스의 보급과 전철역사와 같은 공공시설의 편의확보에 대한 건교부의 추진계획은 장차법 시행에 필요한 사안을 만족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여짐.
- 이동·교통수단과 관련한 장차법의 시행령안이 교통약자법을 기반으로 제정 중에 있음을 감안하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 실행계획을 세우는 일은 장차법 실행의 현실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 이해할 수 있음.

□ 문화관광부

- 관련법과 제도를 충분히 활용·개선하고 이 전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도입하려는 점은 장차법 실행의 현실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보여짐
- 체육활동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체육지도인력을 양성하고 장애인체육용기구생산을 장려하려는 정책은 시행령에 명시될 체육활동부문의 편의제공 실천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여성가족부

- 장애여성근로자를 위한 직장보육서비스이용 등과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통해 수요가 높은 곳에 장애아동 보육시설을 우선 배치한다는 계획은 상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보여짐
- 그러나 부서 계획들에 장차법에 위임된 편의내용과 단계적 시행방법 등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법실행의 현실성을 고려할 수 없음은 아쉬운 점임.

□ 방송위원회

- 자막방송수신기 보급과 DA방송수신기제품 개발, 또 장애인과 노인 등을 위한 자막방송의 확대편성 등 방송위의 차후 추진계획은 디지털 방송으로의 환경변화에 대해 신속한 적응을 위한 적절한 대책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방송위의 이러한 추진 계획은 분명 여러 단계를 통하여 실행할 연차적 계획이며, 이는 장차법 제21조의 규정조항이 단계적 시행을 위한 구체적 방법과 절차 등을 시행령에 위임해 놓지 않은 관계로 법시행에 따라 곧바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하여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확보를 위해 장차법의 부분적

개정과 같은 실행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음.

제5장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안) 검토

제1절 장차법 및 위임된 시행령의 내용과 관계법령

- 장차법은 총칙을 비롯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여타의 법령들을 준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용어를 정의하거나 내용을 규정함.
 - 구체적인 정당한 편의의 내용 및 적용대상의 구체적 범위와 권리구제의 절차·방법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시행령은 기존법령을 중심으로 이를 개정하고 보완하거나 혹은 기존 법령을 준용하여 제정필요.
- 장차법은 모두 여섯 개 장, 오십 개 조, 그리고 세 개의 부칙으로 구성됨. 이 중 고용, 교육, 재화와 서비스,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모·부성권, 가족·가정·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의 영역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 그리고 단계적 시행절차와 이의 방법 등을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 시행령 위임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첫 번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하 고용촉진법)등의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과의 관계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관련 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기구의 구체적인 범위.
 - 두 번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공공기관의 정의.
 - 세 번째,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 등에서 정한 기관 이외의 교육기관의 범위.
 - 네 번째, 고용부문에서 사용자가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 다섯 번째,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때 사용자의 비용부담방식 및 그 지원형태.
 - 여섯 번째, 교육과정에 있어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

- 일곱 번째, 교육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의 설치 혹은 배치의 내용.
- 여덟 번째, 재화와 서비스 부문에 있어 장애인의 시설물 이용을 위한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 아홉 번째, 이동 및 교통수단에 있어 장애인의 이동·교통수단·운전면허시험 등에 관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 및 단계적 범위에 관한 내용.
- 열 번째, 정보통신과 의사소통부문에서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편의제공의 단계적 범위와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필요한 지원의 내용 및 범위의 명시.
- 열 한번째,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 열 두번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기관 등이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배제 혹은 분리하지 않게 하기위하여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사항.
- 열 세번째, 사법·행정절차 부문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
- 열 네 번째, 장애여성의 직장보육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사항.
- 열 다섯번째,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사항(시정명령 기간, 절차, 방법 등) 등임.

제2절 시행령 제정과정과 주요 쟁점사항

□ 제정과정

- 정부합동준비단은 먼저 관계부처별로 시행령 실무작업 및 연구용역을 추진함. 이후 총 8회에 걸친 실무진 회의를 열어 각 부처별 시행령안을 형평성 있게 조정하기 위하여 협력작업을 추진. 이 과정에서 정부합동 준비단은 9월부터 10월까지 장애인 당사자단체 연대인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와 3차례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장애인들의 구체적인 요구를 수렴하여 시행령안에 반영하려 노력함. 세 번의 간담회를 통해 절충단계를 거쳐 마련된 시행령안으로 12월 20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장차법 시행방법과 과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

□ 주요쟁점사항

- 법 제3조 제4호(공공단체의 정의)
 - 쟁점사항: 장차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범위
 - 법 제3조 제1항 제6호(정당한 편의제공 교육기관)
 - 쟁점사항: 정당한 편의제공 교육기관의 범위
- 법 제10조 제3항(사용자가 제공해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 쟁점사항 1. 적용대상사업장의 규모
 - 쟁점사항 2. 정당한 편의제공 사업장의 시설
 - 쟁점사항 3. 의학적 검사의 비용부담 방식
- 법 제14조 제1항 제6호, 제14조 제3항(교육자가 제공해야 할 정당한 편의의 내용과 장애학생 지원부서 및 담당자)
 - 쟁점사항 1. 정당한 편의의 내용
 - 쟁점사항 2. 장애학생 지원부서 및 담당자
- 법 제18조 제4항(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 쟁점사항: 정당한 편의의 범위와 내용
- 법 제19조 제8항 (이동 및 교통수단에서의 정당한 편의의 내용)
 - 쟁점사항 1. 정당한 편의제공 대상시설
 - 쟁점사항 2. 운전면허시험 등에 관한 정당한 편의제공의 내용
 - 쟁점사항 3.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 시 요구되는 운동능력 측정시험 실시
- 법 제21조 제4항(정보통신·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 쟁점사항: 의사소통을 위한 편의제공의 내용
- 법 제24조 제4항(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등)
 - 쟁점사항: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 법 제33조 제6항(장애여성의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 쟁점사항 1. 직장보육시설과 관련한 편의제공 적용사업장의 범위

- 쟁점사항 2. 보육수당지급 등 조세감면 및 제정지원
 - 쟁점사항 3. 시행시기의 유예기간
- 법 제43조 제4항(시정명령)
- 쟁점사항: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의 장애인 당사자 수 명시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 한국의 장차법은 고용, 공공기관의 서비스제공, 민간의 일부 시설과 서비스 그리고 전기통신만을 대상으로 하여 적용 범위를 한정하는 외국법과는 달리, 거의 모든 생활영역을 규정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처벌조항 또한 법령 전 영역의 조항에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있음.
- 장애인에 대한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동시에 사용자, 시설주, 사업자 등의 과도한 부담 등 불가피한 면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권리보장이라는 적극적 측면과 사용자, 시설주, 사업자 등에 대한 의무부여라는 소극적 측면사이에서의 적절한 균형 모색이 필요함.
- 장차법 실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 전반에 걸쳐 적용되는 벌칙조항 마련의 근거와 내용에 대해 범사회적 이해를 높여야 하고, 장애인과 시설주, 사업자 등 편의제공의 주체와 편의향유의 주체들의 상이한 입장과 관련하여 적절한 균형모색이 이루어 져야하며, 법이 시행됨에 따라 곧바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 조항들을 개정하여 단계적 시행과 적용이 가능하도록 해야함.